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918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38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91868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다연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5.

주문

1. D의 피고에 대한 2017. 6. 10.자 40,000,000원, 2017. 6. 12.자 3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3,021,929원, 원고 B에게 26,978,0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아내인 E과 함께 E 명의로 남양주시 F 소재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D은 E과 함께 2011. 1. 28.부터 2016. 12. 28.까지 원고 A으로부터 총 3억 1,894만 원을, 2011. 1. 28.부터 2013. 2. 28.까지 원고 B로부터 총 2억 원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D과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B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16. 2019차전222323호로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억 1,8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9. 5. 13. 송달되어 2019. 5. 28. 확정되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11. 26. 2019차1599호로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20. 2. 27. 송달되어 2020. 3.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년경 D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영수익 일부를 지급받았다. D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7. 6. 10.

4,000만 원, 2017. 6. 12. 3,000만 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66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의 준비서면과 2020. 10. 20.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6. 10. 및 2017. 6. 12.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 10. 20.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사건의 판결문 이유에 ‘피고 측도 2014.경 D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운영수익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2017. 6. 10. 및 같은 달 12.에는 D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D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D의 2017.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이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성은 쟁점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하면서 선의 항변을 하였던 점, 2020. 10. 20.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문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때 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2020. 10. 20.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D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21. 4. 8. 이전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D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원고 A은 3억 1,894만 원의, 원고 B는 2억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2020. 6. 10. 및 2017. 6. 12.에 모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2) D의 무자력

D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3억 1,894만 원의, 원고 B에 대하여 2억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2011. 6. 9.경부터 H로부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7. 7. 16.경 H에게 총 4억 7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7. 10.경부터 신용보증기금, I 주식회사 등 D에 대한 채권자들이 D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D에게 시가 2억 4,500만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J 지상 다세대주택 K호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인정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에 D에게 자금 투자를 하였고 2014. 8. 5.부터는 D의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D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수년간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다가 D이 2017. 8.경 잠적하기 직전인 2017. 6.경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7.경 D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는 D에게 2014년경 1억 6,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이고, 피고와 D 사이의 투자금 상환에 관한 약정의 존부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피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7. 6. 10. 4,000만 원 및 2017. 6. 12. 3,000만 원을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돈은 현재 피고에 의하여 소비되었거나 피고의 다른 재산과 혼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43,021,929원[$= 70,000,000\text{원} \times 318,940,000\text{원} / (318,940,000\text{원} + 200,000,000\text{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원고 B가 구하는 26,978,071원[$= 70,000,000\text{원} \times 200,000,000\text{원} / (318,940,000\text{원} + 200,000,000\text{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유리